

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.

대 통 령 박 근 혜 인

2014년 9월 18일

국 무 총 리 정 흥 원

국 무 위 원 윤 성 규
환경부장관

●대통령령 제25613호

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
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,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7조 중 “특별자치도지사”를 각각 “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”로 한다.

제9조제2항제3호 중 “사용중지명령”을 “조업정지명령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8호 중 “법 제30조제1항 제1호·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”을 “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”으로 한다.

별표 제2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삭제하고, 같은 호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나목 및 다목으로 하며, 같은 호 나목(중전의 라목)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나.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30조 제1항	100	150	200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	-----	-----	-----

부 칙

이 영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악취배출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 발령하는 행정처분인 사용중지명령을 조업정지명령으로 변경하고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악취배출시설을 가동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를 형벌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악취방지법」이 개정(법률 제12520호, 2014. 3. 24. 공포, 9. 25. 시행)됨에 따라, 사용중지명령이라는 용어를 법률에서 사용한 용어에 맞게 조업정지명령으로 변경하고, 형벌로 전환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

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.

대 통 령 박 근 혜 인

2014년 9월 18일

국 무 총 리 정 흥 원

국 무 위 원 이 기 권
고용노동부장관

●대통령령 제25614호

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

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호 및 제2호 중 “법 제15조의2제4항”을 각각 “법 제15조의2제4항 및 제15조의3제2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의2 중 “법 제15조의2제1항”을 “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15조의3제1항”으로, “같은 조 제2항”을 “법 제15조의2제2항(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”으로 한다.

별표 3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호 나목의 위반행위란 중 “법 제15조의2제4항”을 “법 제15조의2제4항 및 제15조의3제2항”으로 한다.

가. 법 제14조(법 제15조의2제4항 및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24조제1항			
1) 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		1억원의 범위에서 해당 배상 명령액	1억원의 범위에서 해당 배상 명령액	1억원의 범위에서 해당 배상 명령액
2) 근로시간, 휴일·휴가 등 근로조건의 차별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		500	1,000	2,000
3) 시설 등 이용의 차별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		500	1,000	2,000

부 칙

이 영은 2014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에게 대해서는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같은 조건에 있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도 차별적 처우를 조사하여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, 사업주가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 사실을 통보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,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12469호, 2014. 3. 18. 공포, 9. 19. 시행)됨에 따라, 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그 배상명령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고, 그 밖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위반 횟수에 따라 500만원, 1,000만원 및 2,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,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주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이행상황 제출 요구 권한 등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

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.

대통령 박근혜 인

2014년 9월 18일

국무총리 정홍원

국무위원
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

●대통령령 제25615호

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

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5호의2 중 “법 제21조제3항 및 제21조의2제4항”을 “법 제21조제3항, 제21조의2제4항 및 제21조의3제2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의3 중 “법 제21조의2제1항”을 “법 제21조의2제1항 및 제21조의3제1항”으로, “같은 조 제2항”을 “법 제21조의2제2항(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”으로 한다.

별표 2 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호 마목의 위반행위란 중 “법 제21조제3항 및 제21조의2제4항”을 “법 제21조제3항, 제21조의2제4항 및 제21조의3제2항”으로 한다.

라. 법 제21조제3항, 제21조의2제4항 및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46조제1항			
1) 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차별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		1억원의 범위에서 해당 배상 명령액	1억원의 범위에서 해당 배상 명령액	1억원의 범위에서 해당 배상 명령액
2) 근로시간, 휴일·휴가 등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		500만원	1,000만원	2,000만원
3) 시설 등 이용에 대한 차별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		500만원	1,000만원	2,000만원

부 칙

이 영은 2014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.